



# 소공인 홈페이지 제작 지원

지원금 신청서 제출 방법 안내

# 홈페이지 제작 지원

## 지원대상

화성시 관내  
소공인 14개사

## 지원내용

홈페이지 구축에 필요한  
행정 절차 및  
비용 일부 지원

## 지원금액

업체당 공급가액  
최대 150만원  
(부가세 제외)

**\*방문접수만 가능**

**지원금 신청서 제출 기한: 2021년 10월 22일(금) 17:00 까지**

지원금 지급 신청서 양식은 '2021년 2차 『홈페이지 제작 지원 사업』 모집 안내 게시물 참고



# 진행절차

## 1 홈페이지 제작 진행

센터 승인 후 서약서 제출 후 진행  
제작 세부사항 변경시 반드시 센터 승인 후 진행  
소공인과 홈페이지 제작 업체간 계약서 작성  
\* 화성시 관내 홈페이지 제작 업체

## 2 홈페이지 제작 완료

제작된 홈페이지 화면 및 주소 완료보고서에 작성  
홈페이지 소스 파일 메일 송부  
제작 완료 후 제작업체에서 소공인 업체로  
홈페이지 제작 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

## 3

## ★ 지원금 신청서 제출 (~10/22) ★

방문 제출만 가능  
지원금 지급 신청서류 내용 검토  
자부담액 및 부가세 입금 내역 확인

## 4

##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 지급

홈페이지 지원 사업 참여 업체 온라인 만족도 조사 진행  
센터 담당자가 홈페이지 사이트 확인 후  
홈페이지 제작 업체로 지원금 지급

## 지원금 신청서 제출서류

1. 지원금 지급 신청서[붙임5] 1부 (직인 날인, 서명 불가)
2. 제작된 홈페이지 컴퓨터 파일 (메일로 제출)
3. 완료보고서[붙임6] 1부 (홈페이지 주소, 화면 캡처본)
4.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원본 각 1부 (제작업체 직인 날인)
5. 전자세금계산서 1부 (종이계산서 불인정)
6.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
7. 제작업체 통장사본
8. 자부담금(부가세 포함) 입금확인서 1부
9. 홈페이지 제작 계약서 사본 1부

# 홈페이지 지원사업 진행 시 유의사항

---

## ☑ 계약체결 시 필수 항목

1. 최소 페이지 수는 8page 이상
2. 모바일(스마트폰)에서도 호환 가능하도록 제작
3. 도메인, 호스팅 관리 및 보수는 2년간 무상제공(2년 후 유지비용 최소화 제시 업체로 선정)
4. 임대형 홈페이지가 아닌 독립형 홈페이지로 제작(도메인, 호스팅 소유권은 소공인이 가져야 함)
5. 간단한 텍스트 및 게시판 수정 등 쉬운 작업은 소공인이 직접 관리 가능하도록 제작

☑ (세금계산서 발행) 홈페이지 제작 완료 후 제작업체에서 소공인 업체로 발행,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

☑ (자부담액 및 부가세 이체) 소공인 업체에서 부가세 및 자부담액 제작업체로 지불

☑ (지원금 신청서 제출) 자부담액 및 부가세 이체 확인증 등을 포함한 기타 제출 서류 소공인센터로 제출

☑ (제작된 홈페이지 확인) 홈페이지 제작이 제대로 되었는지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 확인



## 홈페이지 지원사업 진행 시 유의사항

---

- ☑ 지원금 신청서 제출 마감일(10월 22일)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안될 수 있음
- ☑ 지원한도 초과비용 및 부가세는 업체 부담임.
- ☑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하여 이견사항은 소공인과 홈페이지 제작 업체간 해결해야함
- ☑ 홈페이지에 실을 제품 사진은 제품이 돋보일 수 있도록 촬영
- ☑ 지원금 지급 신청서는 방문제출만 가능하며, 소공인 업체 직인 필수(서명불가)
- ☑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에는 반드시 아래의 항목이 기재되어있어야 함  
-공급자, 공급받는자 양사 업체명(또는 대표자명) 및 계좌정보, 입금 금액



**홈페이지 제작 지원**

**감사합니다**



**소공인특화지원센터**

**031-354-3641**

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토성로 14 화성상공회의소 2층